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길 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길 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21. 9. 14.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중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대상이 대형공사와 특정공사 그리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된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